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심 사 보 고 서

2026. 7.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8일, 김소희의원 등 17인

나. 회부일자: 2025년 10월 2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3.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15.) 상정, 축조심사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4. 22.) 상정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6. 5. 1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5.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소희의원)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부족함.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제정안은 정부의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 중단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규모 일자리 감소와 지

역 상권 침체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발전소 소재 지역 및 관련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제정안은 발전소 폐지지역 및 인접지역 지정, 국무총리 또는 소관 부처 소속의 위원회 신설, 중장기 지원계획(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노동자 고용안정(고용보조금, 전직 지원, 고용승계 등) 및 지역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행정적 특례(국고보조금 인상, 조세 감면, 별도 기금 조성 등)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지역과 계층의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기후정의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음.

다만, 제정안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 신설 및 특구 지정 규정이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및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제도와 기능적으로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승계 의무화나 특정 기금(고용보험기금 등)의 목적 외 활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이 타 산업위기 지역 및 구직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관계 부처의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입법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타 산업과의 역차별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별 제정안들의 지원 요건과 특례 방식을 종합적으로 비교·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단일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7. 기타 사항

없 음